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변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1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를 농업인상담소로 변경하여 현재 통용되는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 명칭변경(안 제15조, 제16조)
 - 농민상담소 → 농업인상담소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4호 중 “농민상담소”를 “농업인상담소”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농민상담소의 설치)”를 “(농업인상담소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농민상담소”를 각각 “농업인상담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소관사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~ 13. (생략) 14. <u>농민상담소</u> 운영	제15조(소관사무)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14. <u>농업인상담소</u> ----
제16조(<u>농민상담소의 설치</u>)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<u>농민상담소</u> 를 둘 수 있으며, <u>농민상담소</u> 를 둘 경우 <u>농민상담소</u> 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6조(<u>농업인상담소의 설치</u>) -- ----- -- <u>농업인상담소</u> ----- -- <u>농업인상담소</u> ----- <u>농업인상담소</u> ----- ----- -----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이나 실·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